콜마홀딩스㈜ 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콜마홀딩스 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라 한다)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관 제37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거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점검하는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, 운영 및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장 구성

제3조 (구성 및 임기)

①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3분의 2인 이상은 독립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④ 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만료·사임·해임·사망 등의 사유 및 이사 지위의 상실으로 인하여 제1항의 위원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위원회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이사를 위원으로 신규 선임한다. 다만, 신규 이사를 신규 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고,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한다.

제4조 (위원장)

①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. 단, 위원장은 독립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 아닌 위원회 임원 중 독립이사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독립이사인 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 당사의 이사 재직기간이 오래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, 당사의 이사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위원장 아닌 위원회 임원 중 독립이사인 위원이 없거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, 잔여 위원회 임원 중 당사의 이사 재직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당사의 이사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간사)

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관리한다.

제3장 운영

제6조 (종류)

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
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 시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.

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권자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어려운 때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원장 직무 대행이 직무를 수행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

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 (소집절차)

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회의 1주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모사전송기(FAX), 유선, 전자메일(E-mail) 등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 (의결사항)

①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. 단 상법 제393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이나 정관에서 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다고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가 의결하기로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당사와 계열회사간 사채 발행, 유상 증자, 주식 취득 등의 유가증권 거래
2. 당사와 계열회사간 중요한 차입, 보증 및 담보제공(건당 100억원 이상) 거래
3. 당사와 계열회사간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(개별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투자)
4. 당사와 계열회사간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. 단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.
5. 당사와 관계회사간 「공정거래법」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대규모 내부거래
6. 「내부거래 관리 규정」 등 '내부거래' 관련 규정의 제·개정

② 제1항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또는 및 사업적 측면에서 '내부거래위원회'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거래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보고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'내부거래' 전담 부서의 검토 현황(당사 및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간) 및 주요 업무 실적
2. 기타 업무 수행 중 이사회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주요 업무 사항

제11조 (의안제출)

① 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이유는 각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1주일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간사는 전항의 접수 의안에 대한 문안 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.

제12조 (결의방법)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관련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(의사정족수)의 계산에는 포함되나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(의결정족수)에는 산입되지 않는다.

③ '상법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는바, 본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다.

제4장 권한 및 의무

제13조 (권한)

① 위원회는「공정거래법」제45조 제1항 제9호(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금지) 및 제47조(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)를 준수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열회사간 발생하는 대규모내부거래는 이사회 부의 전 사전 심의하고, 그 외에 거래 성격에 따라 간사가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한 내부거래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른 심의 안건에 대하여 '적정', '부적정' 또는 '조건부 적정' 등의 의견을 결정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이사회 부의가 있는 경우 심의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해당 심의 결과, 주요 논의 사항 및 권고 의견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.

③ 위원회는 언제든지 내부거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,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 선정기준,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당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,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 받을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당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4조 (의무)

①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당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내부거래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기타사항

제15조 (통지의무)

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위원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집된 이사회에서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16조 (의사록 작성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7조 (경비)

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사가 부담한다.

제18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6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내용이 있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